

공정위 2026년 하반기 추진계획: 유통·하도급 대금 제도 개편 및 지자체 조사권 신설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 관리

2026. 08. 14.

I.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6. 8. 4. 발표한「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정책 기조를 이어가며, 그 핵심 세부 방안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정당한 대가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 내용 중 유통·하도급 분야와 관련하여 기업과 거래처가 특히 주목해야 할 핵심 개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금 정산·지급 제도 개편**

: 유통분야(대규모유통업) 대금 지급기한 50% 단축,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 단축 및 하도급대금 3중 보호장치 도입

- **법집행 및 제재 체계 강화**

: 광역 지방정부의 조사·처분권 신설(하도급·가맹 등), 과징금 상한 상향 및 민사적 구제 수단 확대

이러한 정책 방향은 유통·이커머스·제조·건설 업계 전반의 정산 주기와 자금 운용 구조, 나아가 계약 및 분쟁 대응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입법 및 법 개정 확정 전 단계에서 자금 집행 프로세스와 계약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주요 정책 추진 내용

1. 유통분야: 대금 정산기한 50% 단축 및 불공정 수수료 근절

- **대금 지급기한 대폭 축소 (현행 대비 50% 단축)**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미지급 및 정산 지연으로 인한 납품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정산기한은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특약매입·위수탁·매장임대차거래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각각 50% 단축하여 직매입은 30일, 특약매입 등은 20일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 **불공정 거래관행 점검 및 엄정 대응**

대금 정산기한 단축과 더불어, 공정위는 대형마트 등의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지연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엄정 제재할 방침입니다.

2. 하도급분야: 하도급대금 3중 보호장치 도입 및 법정 지급기한 단축

• 3중 보호장치 도입 및 지급기한 단축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부도·지연 지급 등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3중 보호장치' 도입 (①지급보증의무 확대, ②발주자 직접지급 실효성 제고, ③전자지급시스템 활성화)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하도급 대금의 법정 지급기한 역시 단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기술탈취, 산업안전 관리비용 전가행위 집중 점검 및 제재

공정위는 기술보호감시관(12명) 운영을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조선, 플랜트, 전력 등 국가기반산업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설·제조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분야에서 원사업자가 안전관리 책임과 관련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불공정 특약 및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엄단할 방침입니다.

3. 광역 지방정부에 직접 조사·처분권 부여

• 지방정부로의 집행권한 분산

공정위의 사건 처리 기간 단축과 현장 밀착형 구제를 위해 하도급, 가맹, 대리점, 표시광고 4개 분야에서 법 위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행위(예: 계약서 미교부 등)에 대해 광역 지방정부에 직접 조사권 및 처분권(과태료, 시정 권고)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III. 공정위 정책 추진에 따른, 기업 측면의 주요 고려사항

1. 단기자금 운용 및 정산·결제 시스템 재정비

• 주요 이슈

: 대규모유통업 대금 정산기한 50% 단축(60일→30일, 40일→20일 등) 및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 축소, 3중 보호장치(전자지급, 지급보증 확대) 도입이 추진됩니다.

• 기업 측면 고려사항

- **운전자금(Cash Flow) 재수립**: 정산 주기 단축에 맞추어 단기 자금 집행 일정을 전면 재조정하고 자금 유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ERP 및 결제 시스템 고도화**: 변경된 정산 주기와 전자지급·지급보증 시스템 연동을 위해 재무 및 회계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불공정 특약 사전점검 및 기술보호 컴플라이언스 강화

• 주요 이슈

: 안전관리 비용·책임 전가(건설·제조),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가 및 부당 대금 공제(유통·가맹)를 집중 점검하며, 기술보호감시관 배치에 따라 기술자료 요구·유용 단속을 강화합니다.

• 기업 측면 고려사항

- **계약서 및 현장 특약 전수 점검**: 납품계약서, 하도급 기본계약, 현장 특약내 부당 전가 조항 유무를 사전 점검하고 표준계약서 기반으로 교부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 기술자료 관리 프로토콜 수립: 기술자료 수발신 시 법정 서면(기술자료 요구서) 발급 프로세스를 의무화하고 내부 기술보호 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광역 지방정부 조사·처분에 따른 대응 체계 다변화

- **주요 이슈**

: 광역 지방정부에 하도급·가맹 분야 직접 조사·처분권(과태료, 시정권고)이 부여되며, 공정위와 지방정부 간 중복 조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기업 측면 고려사항**

- 현장/지방 사업장 대응 매뉴얼 정비: 소액 분쟁이나 서면 미교부 등 지자체 차원의 현장 밀착형 조사에 대비하여 지사 및 현장별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IV. 기업 실무대응 체크리스트

유통업체, 원사업자 및 가맹본부로서는 법 개정 완료 이후 사후 대응하기보다, 입법 및 정책 추진 단계부터 자금 수지 구조와 계약·조사 대응 체계를 단계별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금 지급기한 단축에 따른 단기 자금 집행 부담과 광역 지자체의 현장 밀착형 조사 신설은 지사 및 현장에 직접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1. 단기 대응 (입법 확정 및 시행 전)

- **대금 정산 및 자금 수지 영향 분석**

: 대규모유통업 대금 정산기한 50% 단축 및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 축소에 대비한 단기 자금 집행 주기 전면 점검 및 유동성 영향 분석

- **계약서 및 현장 부당특약 전수 점검**

: 납품계약, 하도급 기본계약 및 현장 특약 내 안전관리 비용·책임 전가 조항,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가 조항 등 불공정 특약 유무 전수 조사

- **입법예고 및 개정 단계 대응 전략 수립**

: 대규모유통업법 및 하도급법 등 개정안의 입법예고, 하위규정 제정 단계에서의 업계 의견 제출 및 법적 리스크 사전 분석

2. 중기 대응 (제도 시행 및 정착 단계)

- **ERP 및 결제 시스템 연동 고도화**

: 변경된 대금 정산 주기와 하도급 대금 3중 보호장치(지급보증 확대, 전자지급시스템 등)의 재무·회계 시스템 연동 및 고도화

- **지방정부 조사 대응 프로토콜 수립**

: 광역 지자체의 직접 조사·처분권 신설에 대비한 지사 및 지방 현장별 대응 매뉴얼 정비와 조사 청구 일원화

- **기술자료 관리 및 서면 교부 프로세스 의무화**

: 기술보호감시관 배치에 대비한 기술자료 수발신 시 법정 서면(기술자료 요구서) 발급 및 보관 절차 확립

3. 장기 전략 (지속적 컴플라이언스 정착)

- **상생협력 기반의 거래조건 결정 구조 재설계**

: 단기 정산 및 대금 보호장치를 전제로 한 납품업체·수급사업자와의 거래조건 결정 프로세스 및 상생협력 체계 재설계

V. 결론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추진계획은 단순한 행정 지도를 넘어 대규모유통업법 및 하도급법의 대대적인 법 개정과 집행 체계 개편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 확정 이후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입법 추진 단계에서부터 자금 집행 구조와 계약·서면 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내부 대응 프로토콜을 정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무법인(유) 바른은 공정거래 및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별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진단 및 대응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무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정양훈 구성원변호사

T. 02-3479-7854

E. yanghun.chung@barunlaw.com

이기쁨 구성원변호사

T. 02-3479-2671

E. kipeum.lee@barunlaw.com